

202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문

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?

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,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, **기업이 디지털 일자리 직무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**하는 사업

1 지원대상 기업

①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

- 조건 :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)

②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시 사업 참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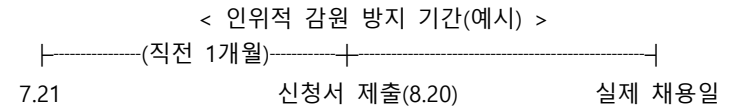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
- 지식서비스산업
- 문화콘텐츠산업
-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-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
2-1 지원요건 (기업)

①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 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사업참여가능

-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참여 가능
- **콘텐츠 기획형, 빅데이터 활용형, 기록물 정보화형, 그 외 기타형으로 직무유형 해당 시 사업참여가능 (3p. 참여 유형 참고)!**

②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


◆ 고용조정 이직

<고용보험 상실사유> 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(대분류)

- 23. (중분류)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
 -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, ②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,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, ④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,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용하지 못해서, ⑥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
- 26. (중분류)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
 -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

③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통해 **사업참여신청 이후 발생한** 신규 채용건에 대해서만 사업참여 가능

- 기존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**사업 신청 불가** (사업신청 승인 이후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)

<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>

□ I유형: 콘텐츠 기획형

- 개요: 홈페이지 기획·관리, 유튜브·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·관리·운영에 관한 직무
- 직무 예시
 - ▲ 홈페이지 인터페이스, 메뉴 등에 대한 기획·개발·관리 및 지원
 - ▲ 대내·외 설명·홍보·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, 카드뉴스,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·제작·관리 및 지원
 - ▲ 유튜브, SNS(블로그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), 모바일 메신저(카카오톡, 플러스 친구 등),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·관리·운영 및 지원
 - ▲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·제작·관리·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

□ II유형: 빅데이터 활용형

- 개요: 어플리케이션·소프트웨어 개발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
 - *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, 새로운 IT 기술·프로그램·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
- 직무 예시
 - ▲ 업무에 활용할 목적의 빅데이터 자료 수집·정리·분석 및 지원
 - ▲ 기업 자체 보유 정보 및 공공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·지원
 - ▲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·개발 및 지원
 - ▲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

□ III유형: 기록물 정보화형

- 개요: 기업 내 문서,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
- 직무 예시
 - ▲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,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
 - ▲ 중간·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,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·지원
 - ▲ 지리·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·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·지원
 - ▲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

□ IV유형: 기타형

- 개요: 위 I~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
- 직무 예시
 - ▲ 전사적자원관리(ERP) 시스템 도입, IT 활용 업무재설계(BPR) 등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
 - ▲ 기타 I~III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(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)

2-2 지원요건 (청년)

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-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
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단, 다음의 경우는 취업 중이 아닌 자

-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-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- *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
③ 근로조건

- (근로계약)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
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/단시간 근로자 제외
-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
-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
 - * 신청기간 초과 시 지원 제외 (예: '20.12.20. 채용 시 '21.8.31.까지만 신청 가능)

3-1 지원제외 (기업)

①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
 - * 부동산업,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

조, 「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*

*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
**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

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-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-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④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- 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- 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* (제외기간)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⑥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-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(예, 조선업)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

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

3-3 지원제외 (청년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- ②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
- 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있는 자
-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⑤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 -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 -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
◆ 관련 사업주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4항)
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
(예: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)
-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
- 다만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⑦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

※ 다만, 아래 가~다의 경우는 지원 가능

가.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

❖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-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

나.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다.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
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** 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4 지원내용

① 참여기업이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 지원

② 지원한도

-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채용계획을 수립

* 예. 사업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,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
- 다만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

* ▲ 채용 필요성 ▲ 직무내용 ▲ 예상 결과물 ▲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

	지원한도	별도 승인 시
5인 이상 기업	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	최대 2배 (최대 60명)
5인 미만 기업	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	최대 2배

* 예. 1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
5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
3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

- 참여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

-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.

5 지원수준

①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(최대 월 180만원)와 간접노무비(월 10만원)로 구성된다.

-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

< 지급 예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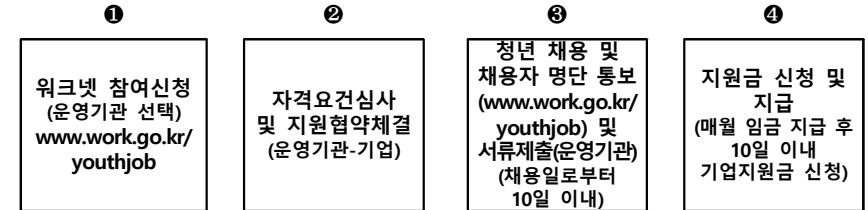
월 보수 총액	지급액	간접노무비
200만원 이상	180만원 (최저임금 100%)	10만원
200만원 미만	지급 임금의 90% (원단위 절사)	10만원

②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

- 단,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6 지원절차

※ 유의사항) 반드시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해야 지원금 혜택 받을 수 있음



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이트 워크넷 통해서 기업명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업참여신청 - 신청 시 운영기관명 부산경영자총협회 클릭

② 사업참여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 심사 및 지원 협약체결

③ 협약체결 이후 청년채용 및 사업신청서류 메일 접수

- 신청서류는 자격 요건 심사 후 담당자 메일 발송

④ 청년 채용 후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기업지원금 신청

- 다만, 기업지원금 신청은 일괄 접수 가능 (예: 3개월 경과후 3개월분 신청)

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Q&A

1.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면,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인가요?

-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·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(기록물 정보화형), 기업의 홈페이지·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(콘텐츠 기획형), 인공지능·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(빅데이터 활용형) 등을 의미함
 - 구체적인 직무 유형 및 예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

2.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?

-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,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
 - 또한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최저임금* 이상 지급해야 하고, 4대 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)에 가입해야 함
 - * (20년)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,310원

3.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?

- 지원 인원은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수 이내, 최대 30명까지 가능함
 - * 예를 들어,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,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 - 단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·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
 - * ▲ 채용 필요성 ▲ 직무내용 ▲ 예상 결과물 ▲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
 - ** 예. 1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5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3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
 - 또한,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됨
 - 예를 들어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,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

4.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

5. 신청 기한이 있나요?

-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'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,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
 -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,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신청 가능
 - 예컨대 '20.12.15에 채용시 '21.8.31까지 신청할 수 있음

6.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?

-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,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
 - *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)
 - * (1~4인 기업의 경우)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,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
 -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,
 -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
 -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음

7.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(또는 일경험 사업) 지원금을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?

- (중복참여)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디지털(또는 일경험) 사업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음
 - * 기존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던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디지털·일경험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
- (순차참여) 청년 디지털(또는 일경험) 사업 참여 청년이 정규직, 근로자 순증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, 동 사업 지원 종료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이어서 받을 수 있음
 - 단, 동 사업 참여 청년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에 일부 조정(예시: 지원 기간 단축 등)이 있을 수 있으며, 상세 내용은 '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

8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창업기업*의 경우 어떤 증빙자료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나요?

*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
-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대표자 생년월일 및 사업을 개시한 날 확인
 - *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되므로, 별도로 서류를 통해 법인설립등기일 확인
- 단, 창업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대표자 변경 이력을 확인한 후 자격 요건을 판단

9. 청년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나요?

- 기업에서 근태관리가 가능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, 청년이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
- 다만, 이런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반드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해당 기업 및 청년을 포함할 필요

10. 기업에서 사업 참여시 작성한 채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?

* 채용인원, 채용유형, 계약기간, 근로시간 등

- 사업 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필요시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수정 필요사항을 문서로 발송
 - * 채용계획 승인 전에는 보완 요청 기능을 이용해 채용계획 수정 가능

11.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시점은 ①채용계획 승인 이후, ②운영기관-기업 지원협약 체결 이후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?

- ①채용계획 승인 이후 청년 채용 가능

12.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(디지털), 사업 확대(일경험) 등 기업에서 필요 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청년 채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데, 채용 한도 확대 신청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나요?

- 단순히 회사 규모가 크거나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 한도를 확대할 수는 없으며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·사업 확대 등 청년이 많이 필요하게 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용 한도 확대 가능
- 운영기관에서는 ①사유에 대한 객관적 사정 증빙, ②기업의 채용 계획 이행 가능성, ③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및 예산 상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
 - * 대형 IT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, 수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,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IT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, 내용·기간 등을 별도 자료로 제출

13.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, R&D 과제를 수주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?

- 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,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 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
 - *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신규 고용 및 고용유지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복 참여 가능하며, R&D 과제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

14. 기업의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

- (지원요건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여부는 사업주(법인의 경우 본사, 지사 포함) 단위로 판단
- (지원한도) 원칙적으로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법인의 경우 각 지사가 인사·노무·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다면 단위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고, 지원한도도 단위사업장별로 판단
 - * 예) 본사 100명, 지사A 50명, 지사B 60명인 법인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 - ① 본사 일괄 신청 → 총 피보험자수가 210명이므로 최대 30명 채용가능
 - ② 본사, 지사 개별 신청 → 본사 20명, 지사A 10명, 지사B 12명 채용가능

15. 기업이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의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나요?

운영기관은 그간 승인한 채용계획, 배정 인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16.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만 1개월이 되기 전에 1회차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?

청년이 만 1개월을 근무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, 만 1개월 근무 전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

운영기관에서는 청년이 만 1개월을 근무한 후에 다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고, 만 1개월분 임금 지급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* 지원금 지급 예시(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)

청년 채용: 8월 10일

1회차 임금 지급: 8월 26일(대상 기간: 8월 11일~8월 25일)

2회차 임금 지급: 9월 26일(대상 기간: 8월 26일~9월 25일)

⇒ 1회차 임금 + 2회차 임금 중 8월 26일~9월 10일분(일할계산)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

17.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?

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

18. 기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“월 보수총액”의 상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세전 급여가 기준이 되나, 아래 ① ~ ⑤에 해당하는 금액은 “월 보수총액”에서 제외함

① 「근로기준법」과 「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」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,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,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

② 휴업수당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

③ 단순한 생활보조적·복리수행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

* 결혼축의금, 조의금, 의료비, 재해위로금, 교육기관·체육시설 이용비, 피복비 등

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

* 출장비, 정보활동비, 업무추진비, 작업용품구입비 등

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

* 결혼수당, 사상병수당 등

19.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사업 참여 유형 중 I ~ III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, IV유형(기타 유형)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?

동 사업은 청년에게는 IT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, 기업에게는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임

이러한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

< IV유형 참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>

※ 아래 ①, ②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참여 가능

① 청년이 해당 직무를 통해 IT 분야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

- IT 분야 직무 경험이란 IT 기술(정보를 수집·가공·검색·송신하는 등 정보유통과 관련된 기술)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을 말함

* (예시) 기업에 IT 기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유지·보수하는 직무

-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, 자동화 설비를 조작하는 등 청년의 IT 기술 이해 증진과 무관한 직무는 제외

* (예시)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계 직무,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 직무, CNC 장비를 활용한 금속 가공 직무

② 기업이 해당 직무를 통해 IT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

- 기업이 새로운 IT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, 기존에 도입한 IT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기업의 IT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

* (예시)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 및 강화하는 직무

- 청년이 채용된 해당 기업 외 다른 기업의 IT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직무인 경우에도 가능

* (예시) 다른 기업의 IT 기술 도입 및 유지·보수를 지원하는 직무

- IT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기업의 IT 역량 강화와 무관한 직무는 제외

* (예시) 코딩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코딩에 대해 강의하는 직무